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¹⁾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혜림, 차유림²⁾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청소년 지원체계에서 조력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위기청소년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

- ▶ 우리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불량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음
 - 이러한 시각은 위기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배제하고 처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여왔음
 -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제도화 되어야 함
- ▶ 위기청소년은 사회적 조력 없이 위기상황이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경험함
 - 우리 사회에서 위기청소년들이 학교, 지역사회, 사법체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빈약함. 이는 적절한 청소년 대상 서비스 체계가 아직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서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임.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와 괴리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상황이 반복되면 가해청소년으로 변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음. 조기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성장 지원 필요

1) 이 연구의 청소년 면담조사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들과 전문가 조사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이 원고는 외부 집필진과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해외사례는 차유림 교수(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청소년 면담조사는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집필하였음.

■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조력의 제도화가 절실함

▶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최근 세종시의 청소년 자살사건을 계기로 위기청소년의 청소년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의 제도화가 절실히 제기되고 있음. 이 청소년은 상점에서 불과 1만 8천원 어치의 물품(담배 4갑)을 훔쳤으나 경찰은 이를 특수절도혐의로 입건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이를 혼자 고민하던 청소년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
- 이 청소년을 수사했던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1조³⁾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과 기소를 진행하였고, 이 청소년은 수사과정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⁴⁾
- 만약 경찰 수사절차에서 범죄수사규칙이 잘 지켜지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상담과 법적 조력을 받았더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의 근거 도출 및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으나 현실적 한계

- 정부에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중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법무처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대책에 ‘청소년지도자의 조력 받을 권리’를 추진과제로 포함시키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통해 위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연계지원 중임. 하지만 현실 청소년지원체계 및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가 미진하여,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나 수사 및 사법단계에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조력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의 근거 도출 및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이 연구에서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 규정 및 근거제시를 하고, 이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 권리 개념의 확장과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위기청소년들의 조력 받을 권리 제도화는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비스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촉진 시킬 것임. 또한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연구내용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근거

- 위기청소년의 개념,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개념과 그 근거에 대한 문헌정리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국내외 사례

- 국내외의 청소년법률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통한 제공 사례, 학대아동 및 학교 밖 아동 지원정책에 관한 외국 사례 등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김소연, 2018. 4. 5. “담배 네 갑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연합뉴스.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현실화 방안

-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사법체계에서의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논거, 관련 제도 분석 등

▶ 청소년 면접조사

- 총 9명의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위기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했던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 청취하였음. 청소년들 시각에서 조력 체계를 구성할 때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정리하였음

▶ 전문가 의견조사

- 현상·법조계·학계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력의 필요성, 조력 받을 권리의 근거 및 타당성, 조력 받을 기회에 대한 권리와 환경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III.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근거

이 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음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념

▶ 위기청소년의 개념

- OECD에서 발간된 ‘위기의 우리 아이들(Our children at risk)’보고서에서는 위기청소년(children and youth at risk)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정의⁵⁾(OECD, 1995)
- 이봉주·김동일·정익중 (2008)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 여기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 빈곤계층 가정의 청소년, 요보호 청소년을 의미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의미하며,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예방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이란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비행청소년, 범죄 가해 및 피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의미함” (이봉주 외, 2008: p.9)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함

5) “those failing in school and unsuccessful in making the transition to work and adult life and as a consequence are unlikely to be able to make a full contribution to the active society”

- 요컨대 위기청소년이란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결과 성인으로의 이행에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은 특정한 대상이나 계층을 지칭하기 보다는 모든 아동청소년들 중에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는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에 대한 제도화가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념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개념이며 정당화가 필요한 권리 개념임
- 이 권리 개념은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과 같이 특정한 욕구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권에 기반을 둘 수 있음. 즉, 아동청소년의 사회권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개념임
- 이는 모든 청소년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자신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법적·의료적·심리적·교육적·사회 복지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소년의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right to welfare)의 한 측면으로도 이해 될 수도 있음
- 요컨대 이 연구가 제안하는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념은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 추상적인 권리 개념을 프로그램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지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법적·정책적 근거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근거는 국내외의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하여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학교안전청소년폭력예방대책을 살펴 봄

▶ 법적 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로 제13조(상담 및 교육),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가 위기청소년들을 조력해야 하는 근거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략)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의 사회보장권, 교육권, 사법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제27조는 사회보장의 최저생활기준에 대해, 제28조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제12조는 사법절차상 아동의 방어권을, 제40조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가적인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혐의 혹은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취한다.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 복귀 및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아동이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하도록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처리한다.

▶ 정책적 근거

-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의 협동정책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대책에 청소년지도자에게 조력 받을 기회를 추진과제로 포함시킴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에서는 “위기 파·가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기회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다수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우선적 지원 및 사례 관리하도록 함.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정 및 학교 복귀, 자립지원 등 기회 보장”명시 (관계부처 합동, 2018: p.56)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담, 가정 및 학교 복귀, 자립지원 등 기회 제공 (관계부처 합동, 2017: p.16)

VI.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국내외 사례

이 장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함

■ 해외사례: 아동학대 발생과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시의 사회적 조력

▶ 학대받은 청소년의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

- 미국의 경우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학대받은 청소년의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에 대한 전국 조사 실시 등의 목표들을 설정해왔음
-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천 체계 확립을 위해 신고 된 모든 학대 및 방임의심 사건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및 방임 관련 조직 및 기관의 법률적인 대표성을 표방하며, 긴급전화서비스, 지속적인 상담, 지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 기관들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와 관련된 의료, 정신보건 전문가 및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조직 및 기관들 간의 조정과 공조체계 구축 등의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음⁶⁾
- 국립아동학대방임센터(NCCAN :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임. 국립아동학대방임센터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설립된 국립 센터로, 가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연구, 출판물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음⁷⁾
- 즉 미국의 경우, 다양한 법적, 제도적, 실천적 방안들을 통해 학대받은 청소년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홈페이지

7)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6

▶ 학업중단 청소년의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

① 캘리포니아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 미국 연방교육부의 학생 학업중단에 대한 관심은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 분위기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 복교를 도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이 프로그램에는 학생 동기강화 및 학업유지 프로그램(School-Based Pupil Motivation and Maintenance Program), 대안 교육 외부 자문프로그램(Alternative Education Outreach Consultant Program), 그리고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the Educational Clinic Program)이 포함됨
- 학생 동기강화 및 학업유지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찾아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주된 전략은 친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생활 기술 습득, 명확하고 일관된 경계 짓기, 보살핌과 지지, 높은 기대감 갖기,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강화시킴으로써 학교 적응을 도모하는 것임
- 대안 교육 외부 자문 프로그램은 학생 학업중단 회복과 교육 재진입 프로그램으로써, 교실 지도, 직업 훈련, 일반적인 교육 발달 테스트, 시험 대비 및 학업중단과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학업적, 직업적 상담을 제공함.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은 학교를 45일 이상 결석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다시 학교에 복교시키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기본 학습 전략 지도를 하는 동시에 복교에 대한 동기를 강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⁸⁾

② 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 개입과 지원 (School-Wide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학생비행,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단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임.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약 1만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시기별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팀을 이루어 긍정적이고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하고, 가족, 지역사회 등과 같은 위기학생의 주변 환경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한 지속적인 행동개선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연구결과 모든 학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⁹⁾

■ 해외사례: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 모란센터 (Moran Center)¹⁰⁾ @미국, 일리노이주

- 1981년 설립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 에반스턴에 위치한 청소년 옹호를 위한 모란센터(The James B. Moran Center for Youth Advocacy) 에반스턴시의 저소득 가족들에게 법률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이 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며 청소년 의뢰인의 접수상담 및 스크리닝 등을 담당.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상담이 이후 변호를 맡게 되는 변호사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됨. 이 센터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단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임
- 이 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 법률프로그램, 사회복지서비스, 진로수정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비스(아웃리치)와 옹호 프로그램임. 이용대상은 26세 이하의 청소년과 가족임

8) <http://www.cde.ca.gov/ls/ai/dp/>

9) <https://www.pbis.org/school/swpbis-for-beginners>

10) <https://moran-center.org/1123> Emerson St, Evanston, IL 60201, USA

[표 3] 미국 일리노이 주 모란센터의 주요 서비스 개요

주요 서비스	세부 서비스
법률 프로그램	- 소년재판(Juvenile Court), 성인형사재판(Adult Criminal Court), 학교 규칙(School Discipline), 특수교육(School Special Education), 학교기반의 시민 법률 클리닉(School-based Civil Legal Clinic), 법령위반(Ordinance Violations)
사회복지서비스	- 사례관리(Case Management), 개인상담(Individual Counseling), 생애미래 계획(FLFP),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분노조절/갈등해결(Anger Management/Conflict Resolution), 지역사회서비스보조(Community Service Assistance)
진로수정 프로그램	- 범죄기록말소 헬프데스크(Expungement and Sealing Help Desk), 다이버전 프로그램(City of Evanston Diversion Program), 목소리/아이디어/관점 프로그램(Voices, Ideas & Perspectives Program), 생애 미래 계획(Full Life Future Planning), 조정 후 상담/사례관리 프로그램(Post Adjudication Counseling/Case Management)
찾아가는 서비스 및 옹호	- 법률 권리 훈련(Legal Rights Trainings), 정신적 외상 근거 소셜워크 훈련(Trauma-informed Social Work Trainings), 지역사회참여(Community Involvement),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Special Initiatives)

*자료출처: 모란센터 웹사이트(<https://moran-center.org/>)

▶ 팀 차일드(TeamChild)¹¹⁾ @ 미국, 워싱턴주

- 팀차일드는 워싱턴주의 4개 카운티(Yakima, King, Spokane, Pierce)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 1995년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후 20여년 동안 워싱턴주에서 청소년들의 법률지원과 사회복지제공의 활동을 펼쳐왔음
- 모란센터와 유사하게 법률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형태. 법적인 지원과 동시에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등에 대한 권리실현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아동청소년권리옹호기구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을 함께 진행 중
- 주요 사업은 법률 프로그램, 훈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정책옹호 등임

■ 국내사례: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¹²⁾

-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기관으로 부천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수탁 운영 중. 전국 최초 청소년법률지원기관이며 청소년을 위한 법률구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2013.08.05. 조례 제2798호)¹³⁾
- 지원서비스는 법률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구분 됨. 법률지원은 형사사건 및 보호사건 변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민사사건 변호, 청소년관련 법률 상담, 법률교육 등이며, 사회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청소년성장지원, 지역사회연계 등임
- 이용대상은 9세~19세 청소년이며, 이용방법은 전화 및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 가능. 비용은 전액 무료임
- 운용인력은 총 3명이며, 1명의 변호사와 2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

11) <https://teamchild.org/1906>, 1225 S Weller St # 420, Seattle, WA 98144, United States

12) <http://youthlawelfare.or.kr/>

13)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재범방지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법률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청소년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 초동 수사단계부터의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공판과정 이후에도 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등으로 기존 법률구조제도와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임

■ 국내외 사례 시사점

- ▶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의 매뉴얼, 역할분장 등이 체계화되어 있음
 - 아동학대와 학업중단의 경우 청소년 조력 방안이 체계화, 조력자들의 부담 경감
 - 전문적 개입 체계 및 방안을 구축
- ▶ 법률구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동시 제공
 - 법률조력만으로 청소년들을 구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아동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킨 효과 (교육의 효과)

V.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조력 관련 경험과 욕구: 어떠한 조력이 필요한가? (청소년 면접조사)¹⁴⁾

이 장에서는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조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 ▶ 청소년 면접조사는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면담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학교, 경찰관, 청소년기관 종사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와 절실히 필요했던 도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음
 - 연구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일시보호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 담당자에게 관련 경험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모집하였음
 - 연구참여자는 총 9명으로 10대 2명과 20대 7명을 조사하였음

[표 1] 청소년 면접조사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	연령	성별	학력	지역	원가족	위기 경험
A	18	남	고2 재학	서울	누나 2명	가출, 학대, 교사의 과도한 체벌
B	21	남	대 2 재학	서울	부모, 여동생	가출, 흡연, 학교 폭력, 장물취득
C	21	남	고1 중퇴	경기	아버지	가출, 학대, 절도로 인한 보호관찰, 현재 특수폭행으로 재판 진행 중
D	21	남	고2 중퇴	충남	어머니, 여동생 3명	가출, 전과 15범(노역 복역), 학교 폭력, 특수폭행, 사기, 특수절도, 현재 특수폭행으로 재판 진행 중
E	21	여	중2 중퇴	경기	어머니, 오빠	가출, 보호관찰, 가출뎀, 특수절도
F	23	남	고졸	부산	부모, 동생 2명	가출, 학대, 보호관찰, 특수절도, 사기
G	23	남	고졸	서울	부모, 동생	가출, 보호처분 9호, 작업대출, 폭행, 방화살인미수
H	21	여	고졸	경기	어머니, 동생	가출, 음주, 흡연, 폭력피해
I	18	남	고1중퇴	경기	조부모	가출, 폭행, 특수절도

14) 이 파트는 유민상 부연구위원(청소년정책연구원)과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 자료수집과정

- 자료수집은 2018년 7월~8월 약 2개월 간 진행되었고, 면접은 1시간 30-2시간 소요되었음
- 컨택과정: 사전에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직접 컨택하거나 기관 담당자와 전화로 연구목적과 면접과정을 안내하였음. 면접 당일에는 청소년들과 만나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 연구동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음
- 고지된 동의: 연구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불편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알린 뒤, 녹음과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음

▶ 주요 질문

-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은 무엇인가?
-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은 무엇인가?
- 무엇이 변화되기 원하는가?

■ 분석 결과

- ▶ 분석 결과는 4가지 대분류(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도움이 된 경험, 도움이 되지 않은 경험, 기대하는 변화)와 19개 소분류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표 2] 청소년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

대분류	소분류	내용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학대와 폭력이 난무하던 가정	· 혼자 때리다 사람까지 불러 때리던 아버지의 폭력 · 심하게 때리면 가출을 안 할 거라 생각한 아버지 · 묶여서 맞고 가출함 · 부모 잘 만난 애들과 다른 밑바닥 같은 처지에 절망
	가족갈등과 부모 이혼에 따른 여파	· 아버지에게 노출될까 어머니가 초등학교 입학유예함 ·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면 자퇴를 시킨 아버지 · 부모 이혼 후 양쪽 부모를 전전하던 어린 시절 · 어머니랑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로 도래 애들을 이유 없이 때림 · 숨 막히고 답답한 집이지만 거리에서 굶어 죽을 수 없어 들어감
	가난과 결핍, 어린 나이 등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	· 부모 없이 어린 누나들과 살면서 방임 당함 · 학교 급식으로 한 끼만 먹고 물로 버텨 · 선생님께 과하게 맞았을 때, 자신이 어린데 '높으신 분'에게 반항했기에 맞았다고 생각함
	혼자라도 살길을 찾아야겠다고 깨달음	· 주민신고로 경찰출동한 뒤 집에서는 안 때린 아버지 · 흥기로 찢은 뒤 돈을 쥐어주고 신고포기를 종용한 아버지 · 애들을 때리니 괴롭히지 않아 학교 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됨
	학교에서 자행된 신체적, 정신적 폭력	· 가정형편을 힐난하는 선생님에게 반항,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맞음 · 학교에서 이상한 눈으로 찍히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맞음 · 학교에서는 차별 자체가 폭력으로 느껴짐 · '맞을래, 필래'하는 선배 때문에 배운 담배 · 친구를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때림 · 재 개잡아~로 찌는 낙인 · 인간 본능이 형편이 어려운 이에게 처벌을 더 내리는 것 같음
	정신건강의 위기로 위협행동을 함	· 아줌마든 할머니든 그냥 다 때림 · 열 받고 거슬려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름 · 말 안통하면 바로 때림

대분류	소분류	내용
도움이 필요 했던 상황	정신장애 진단을 받음	· 분노조절 장애라고 진단받음 · 불면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음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비행/범죄를 저지름	· 겨울에 쉼터 들어갈 시간도 넘겨 지나가는 사람 찌키기를 함 · 배고프고 돈 없으면 뽕 뜯을 수밖에 없음 · 쉼터에서도 공유되는 범죄와 가출패 정보 · 범죄를 지으면 또 범죄를 짓게 됨
	결국 찾은 해답이 자살시도	· 내 현재 상황이 너무 두려워 자살을 시도 · 탈출구가 없는 아버지의 학대로 자살시도
도움이 된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에 버팀	· 부모님 잘 만나면 풀려날 수 있음 · 그래도 믿을 사람은 부모님 · 약 먹고 자살하려면 순간 생각난 부모님 ·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며 학교를 보내주시는 걸 알고 학교를 그만두고자 했지만, 나의 고교 졸업이 소원이라는 어머니 때문에 버팀
	기다려주고 손잡아 준 어른들	· 무고를 주장해주신 담임선생님 덕분에 퇴학 위기를 넘김 · 호통치고 애들 이해시킨 부산 판사처럼 판사를 잘 만나야 함 · 가출하여 갈 곳 없을 때 동네 아는 형들을 찾아감 · 합의하고 용서해주신 친구어머니 때문에 가출한 후배를 돕게 됨 · 집안 사정에 관심이 없던 다른 선생님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해 준 선생님
	친구들이 알려준 정보에 의존	· 경찰서에서도 버티면 보호자를 안적어도 훈방됨 · 판사에게 보호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감경됨
도움이 되지 않은 경험	소리를 질러도 돕지 않던 어른들	· 학대를 알고도 돕지 않던 친척 ·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학대한 아버지를 훈방 조치하여 절망 ·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경찰에게 도움 요청하였지만 도와주지 않음 ·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 경찰 · 대책 없이 무작정 귀가하라는 쉼터 선생님 · 국선번호사가 건성건성하고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음 · 학교 교사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거나 믿음이 없음 · 담배 권유하는 선배를 이르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교사 · 부의 폭력으로 멍들고 부러져도 도와주지 않던 초등학교 선생님
	세상의 삭막함을 알게 해 준 어른들	· 나랑 같이 놀면 인생 망한다는 친구어머니의 말에 우울증이 걸림 · 시급 깎고 늦은 시간까지 일 시키다 자른 아르바이트 사장 · 전단지 알바를 하다 억울하게 잘림
	문 두드려도 답을 주지 못한 서비스들	· 꾸준히 상담을 받았지만 눈곱만큼도 도움이 안 된 상담 · 가출한 후배를 위해 쉼터에 전화를 해도 늦은 시간이라 받지 않음 · 새벽 3시에 1388에 전화하니 인터넷 검색해서 쉼터 찾으라고 함
	서비스 정보 접근성이 부재함	· 보건소와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 · 학대를 당하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알지 못했음 · 학교에서 쉼터 존재 여부만 알려줌 · 쉼터 존재를 몰라 나쁜 사람을 만나 가출패에 들어가고 이후 노숙함 · 양육시설과 그룹홈이 있는지도 몰랐음 · 지역아동센터를 알려주는 성인이 없었음 · 부모와 분리되어 살 수 있는 곳을 알았다면 바로 갔을 것임

대분류	소분류	내용
기대 하는 변화	넌린 서비스보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함	· 때려서 혼욕하면 비뚤로 나감 · 지루하지 않고 담배 피우게 해주면 상담을 받을 것임 · 교도소라는 물리적 공간은 교화되거나 악화되거나 · 구속이 있는 쉼터 안과 숨은 위험이 도사리는 쉼터 밖에서 혼란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청소년	· 두들겨 맞아도 주변 어른들에게 도와 달라 하지 않음 · 집나온 애들에게 정보제공은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유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 대면하지 않는 상담이 덜 부담스러움 ·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 · 이것저것 안 따지고 지원해주는 곳만 찾을 것임
	법적 제도적 조력이 필요	· 혼자 참고인 진술을 작성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됨 ·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보호자가 있으면 강압적이지 않음 ·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중립적으로 조사해 주는 전문가가 필요함 · 자기 방어를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낙인이 찍혀있는 청소년들은 경찰이 증인들 말만 믿지 말고 중립적으로 조사해주기를 원함 · 일을 저지른 직후에 가장 당황, 직후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음 · 나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음

■ 청소년 면접조사의 시사점

▶ 초기의 위기개입이 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정 내 아동학대, 가정해체, 빈곤 등의 문제는 향후 청소년이 가출하는 촉발요인이 되고, 이 청소년은 의식주의 마련을 위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짐
-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가해경험과 중첩되어 나타나거나, 가해경험으로 전환됨
- 집합적인 장소에서 위기정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만나면 상황이 악화되기 쉬움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요청 의지가 낮음

-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
-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해 선불리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경향
-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주길 바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상태는 지속됨

▶ 도움요청에 좌절하거나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체계와 단절되는 경향이 있음

- 아동학대 신고 경험에서 경찰 개입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고, 경찰 신고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됨
-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에 알리지 않게 되며, 학교에서 연계된 상담이 부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상담기관 및 교사의 노력에 대해 불신하게 됨
- 교사와 경찰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뢰가 그나마 나은 편

▶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까지 반복적인 위험 상황 발생

- 위기청소년들은 위기상황 동안 반복적인 가·피해 상태를 유지. 가정폭력 피해자로 가출을 하면,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폭행, 성매매 등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함
-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향. 하지만 그 기회를 얻기까지 긴 시간 동안 비행, 일탈, 범죄를 경험하게 되어 후회하는 경향

▶ ‘의미 있는 성인 조력자’와의 만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성인’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의미 있는 성인의 도움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황이 개선되는 경향
- 대면서비스에 부담을 토로하는 청소년들은 SNS상담과 같은 비대면상담을 선호하기도 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은 SNS상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면서비스는 관계형성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신뢰가 쌓이면 소통이 수월해지는 편. 조력자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는 것’
- 하지만 의미 있는 성인 조력자를 만나는 건 개인의 행운에 가까움

▶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위기상황 개선 어려움

- 위기청소년들은 복합적인 위험을 경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들어주고 서비스 연계해줄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서비스 필요
- 청소년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 누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맡길 수 있을지,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갈지는 의문

VI.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이 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을 토대로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의 필요성, 조력 받을 기회와 조력 받을 환경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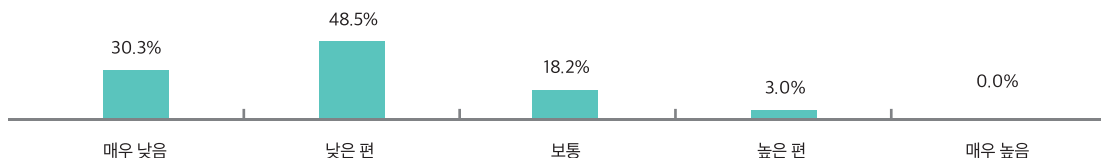
■ 조사개요

▶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함

- 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33명이 참여
- 조사방식은 이메일을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였으며, 객관식·주관식 문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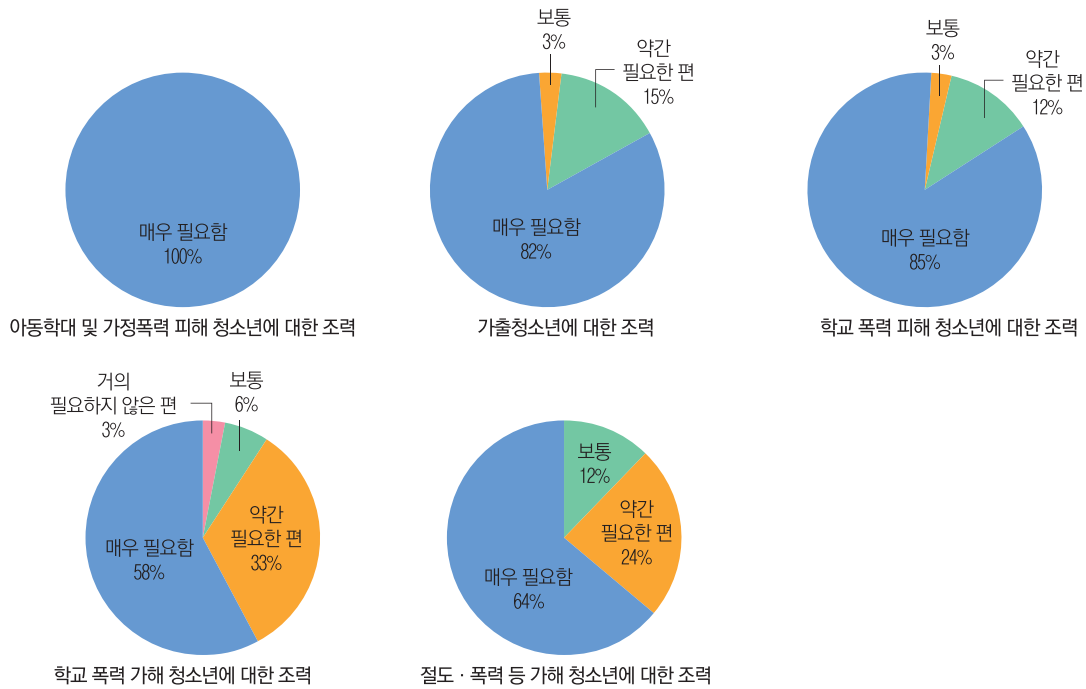
■ 조사 결과

▶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위기청소년 조력 수준이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1] 우리나라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위기청소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력 필요성을 물어보았을 때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력 필요성은 대다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절도·폭력 등 가해청소년에 대한 조력 필요성은 그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하지만 이들 청소년들에게도 조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음



[그림 2]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조력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5점 척도: ①전혀 필요 없음, ②거의 필요하지 않음, ③보통, ④약간 필요한 편, ⑤매우 필요함)

- ▶ 가해청소년도 조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①청소년은 성장하는 시기여서 앞으로 건강한 시민이 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일반적으로 가해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이나 다른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가-피해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 ▶ 그동안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방해요인을 정부차원/학교차원/지역기관차원/개인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그 결과 정부부처 간의 분절적인 대응과 예산부족, 학교의 무관심과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한계, 청소년지원기관의 지역 간 편차, 청소년들의 지원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표 4] 위기청소년 지원의 방해요인 (정부/학교/지역기관/개인차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부차원-중앙부처 간의 분절적인 정책대응	33	3	5	4.48	.712
정부차원-중앙정부의 예산배정 부족	33	2	5	4.45	.711
개인차원-청소년이 지원기관에 대해 알지 못함	33	2	5	4.27	.761
지역기관차원-청소년 기관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	33	1	5	4.15	1.093
정부차원-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수립 미비	33	1	5	4.12	.927
학교차원-학교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의 질 부족	33	1	5	4.12	.927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부차원-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보호법안 미비	33	1	5	3.82	1.044
학교차원-학교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무관심	33	1	5	3.79	.992
학교차원-학교 청소년지원체계 종사자의 역량 한계	33	1	5	3.73	.944
학교차원-학교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의 양 부족	33	1	5	3.70	1.015
개인차원-청소년이 지원기관에 대해 불신함	33	2	5	3.64	1.084
지역기관차원-청소년 기관 종사자의 역량 한계	32	1	5	3.59	1.103
지역기관차원-청소년 기관 프로그램의 질 부족	33	1	5	3.52	1.034
지역기관차원-청소년 기관 프로그램의 양 부족	33	1	5	3.45	1.003
지역기관차원-청소년 기관의 낮은 접근성	33	1	5	3.42	1.062
개인차원-청소년이 지원을 원치 않음	32	1	5	3.25	.950
지역기관차원-청소년 기관의 까다로운 이용조건	33	1	5	2.94	1.171

*응답범주는 ①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거의 동의하지 않음, ③보통, ④약간 동의함, ⑤매우 동의함임

▲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조력 서비스는 상담, 사회복지, 일자리, 법률서비스 등임

- 상담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생계지원서비스, 법률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의료지원서비스, 일자리 지원 및 권익보호 서비스, 학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 하지만 현재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6.1%의 전문가만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아니다 5.8%, 모르겠다 18.2%)

[표 5]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통합서비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신건강에 대한 조력 (상담서비스)	33	3	5	4.79	.485
주거에 대한 조력 (주거지원서비스)	33	3	5	4.64	.603
최저생활 유지에 대한 조력 (생계지원서비스)	33	3	5	4.58	.614
건강에 대한 조력 (건강지원 · 의료지원서비스)	33	3	5	4.58	.614
노동에 대한 조력 (일자리지원 및 권익보호 서비스)	33	3	5	4.45	.617
법률에 대한 조력 (법률지원서비스)	33	3	5	4.27	.801
학습에 대한 조력 (학업지원서비스)	33	2	5	4.27	.801

*응답범주는 1점부터 5점까지이며, ①전혀 필요 없음, ②거의 필요 없음, ③보통, ④약간 필요, ⑤매우 필요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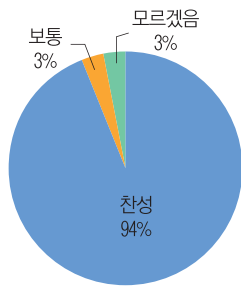
▲ 조력 받을 권리의 제도화 방안은 권리 고지-통합사례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조력 받을 권리의 제도화 방안으로 경찰수사에서 조력 받을 권리 고지 의무화, 학교 상담 시 조력 받을 권리 고지 의무화 등에 대해 높은 동의도를 보였음
-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도입, 비밀보장에 대한 세부규칙 마련,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력받을 권리 교육, 아웃리치 강화에 대한 동의도도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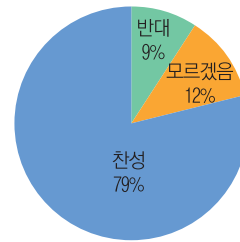
[표 6]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세부 안: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찰 수사 시 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 고지 의무화	33	4	5	4.73	.452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도입	33	2	5	4.64	.783
학교 상담 시 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 고지 의무화	33	3	5	4.61	.556
상담 내용 비밀보장에 대한 세부 규칙 마련	33	3	5	4.52	.66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력 받을 권리 교육	33	3	5	4.48	.755
청소년 기관 대상 조력 받을 권리 교육	33	3	5	4.48	.712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아웃리치) 강화	33	3	5	4.48	.712
법률구조+사회복지제공의 청소년법률지원기관 확대	33	3	5	4.45	.711
경찰청 차원의 청소년 수사매뉴얼 발간	33	1	5	4.42	.867
아동청소년 전담 경찰관제 도입	33	2	5	4.33	.816
경찰 수사 시 청소년 전문가의 동석 의무화	33	1	5	4.15	.939
경찰서·학교 내 청소년 상담실 설치 최소기준 마련	33	1	5	4.15	1.004
청소년 조력서비스 관련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	33	2	5	3.97	.847

*응답범주는 1점부터 5점까지이며, ①전혀 필요 없음, ②거의 필요 없음, ③보통, ④약간 필요, ⑤매우 필요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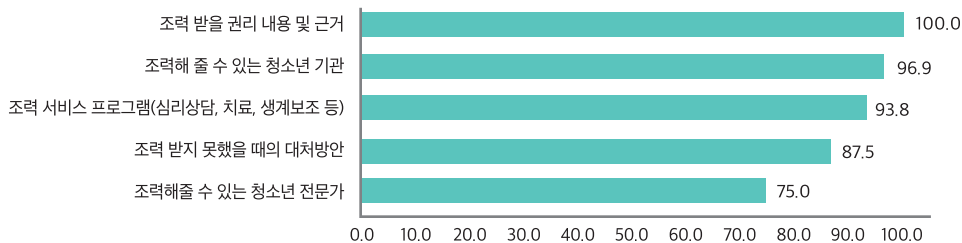
경찰 수사 시 조력 받을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의견



경찰 수사 시 청소년 전문가가 동석하는 안에 대한 찬반의견

[그림 3] 경찰 수사 시 조력받을 권리 제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고지해야 하는 정보는 조력 받을 권리와 근거, 청소년 기관, 조력 프로그램, 조력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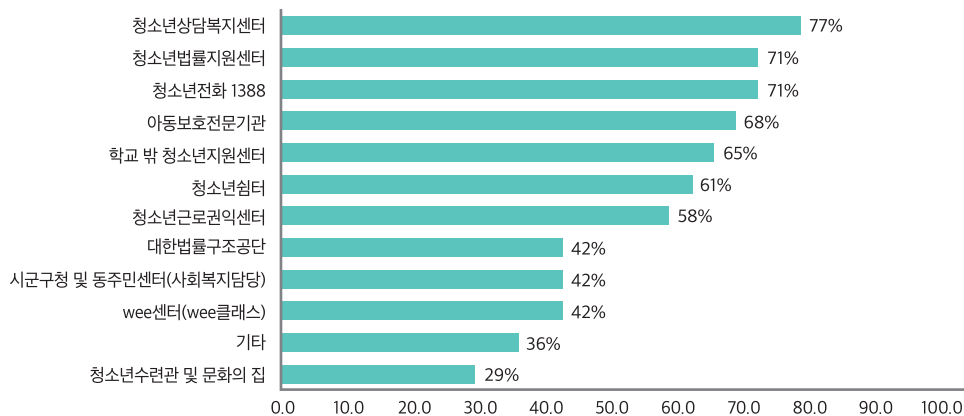


[그림 4] 경찰 수사 시 청소년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하는 비율)

- ▶ 고지해야 하는 기관과 서비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에 대한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단, 청소년들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을 나열하기 보다는 상황 별로 안내를 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림 5] 경찰 수시 시 청소년에게 고지되어야 할 기관 (중복응답/비율)

Ⅶ. 결론 및 제언: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의 제도화 방안

본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조력 받을 권리는 조력을 받을 기회와 조력을 받을 환경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으며, 권리의 제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함.

■ 위기청소년의 조력 받을 권리 제도화를 위한 제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개념의 발전 방안

- ① 조력 받을 권리에 관한 학술적·법적 논의 지속될 필요. 개인의 권리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 개인이 사회에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된다면 상당한 파급력 있을 것
- ②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제도화 방안

① 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현황: 면담조사 결과 청소년 당사자들은 조력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었음. 전문가조사 역시 청소년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개선방안: 통합적 정보 제공 필요(기관별, 문제유형별 조력 기관), 브로슈어 형태와 웹페이지 형태로 정리하여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 업무 수행 인력(청소년 분야 종사자,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들의 청소년 조력체계 인지도를 높여야 함

② 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연계성 강화

- 현황: 위기청소년 대상 조력 체계는 물리적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도움 요청의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도 적절한 기관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계
- 개선방안: 청소년들이 쉽게 조력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표전화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심리적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대면 대응체계(예를 들어 홈페이지의 SNS 창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단, 현재와 같은 분절적 대응은 청소년 조력의 방해요인이므로 부처 통합적 정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종합정보, 다학제적 성격의 정보제공이어야 함. 이와 함께 찾아가는 현장서비스(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③ 조력 받을 권리 고지의 의무화 (학교, 청소년기관, 경찰 및 사법절차 등)

- 현황: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기관과 연계되기 어려움
- 개선방안: 학교, 청소년기관, 경찰 및 사법절차 등에서 미성년 청소년 상담 시 조력 받을 권리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보가 담겨 있는 브로슈어 및 책자 제공, 혹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등을 안내하여 조력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기관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기] 고지 의무 부과 시 청소년에게 배포할 안내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권리 내용	세부 설명
조력 받을 권리 내용 및 근거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조력 영역 및 내용)
조력해줄 수 있는 청소년 기관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년근로권익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복지담당),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해줄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노무사 등
조력 서비스 프로그램	심리상담, 법률구제, 치료, 생계보조 등
조력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방안	적극적으로 구제 및 조력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정보

[표 8]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제도화 방안

구분(내용)	가정 내 조력 (대안양육포함)	학교 내 조력	지역사회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절차의 조력	제도화 고려사항
언제 조력을 받는가 (위기상황)	·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연루가 되었을 때 · 학교에 부적응 할 때	· 또래폭력을 당하거나 연루가 되었을 때 · 학업을 중단했을 때 ·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 일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받을 때	·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가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 본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가

구분(내용)		가정 내 조력 (대안양육포함)	학교 내 조력	지역사회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절차의 조력	제도화 고려사항
어디에서 조력을 받는가 (장소)		· 가정 · 대안양육 시설 · 보호서비스제공 기관	· 학교 · 학교 상담센터	· 동네 · 지역청소년기관 · 일터 (사업장)	· 경찰서 · 검찰청	· 청소년과의 상담 시 비밀보장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 청소년이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가
누구 에게	전문가	· 사회복지사 ·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 지도사) · 사회복지공무원 · 변호사 · 경찰	· 교사, 상담교사 · 학교사회복지사 ·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 지도사) · 학교상담사 · 변호사 · 학교전담경찰	·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 지도사) · 사회복지사 · 공인노무사 · (청소년전담) 근로감독관 · 변호사 · 경찰	· 변호사 · 청소년 전담 경찰 ·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특히 청소년 전문가가 조력을 제공할 경우 법적 지식이 있는가)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구청 및 동주민 센터 · 드림스타트 · 사법체계 (경찰 및 검찰)	· Wee 클래스 & Wee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법률지원센터 · 경찰	· 시군구청 및 동주민 센터 · 드림스타트 · 학교 밖 지원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법률지원센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청소년센터 · 경찰	· 청소년법률지원센터	· 청소년들이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 청소년들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가 · 청소년들이 요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위기개입)
무엇을 (제공서비스)		· 권리고지 · 전문가 상담 · 심리정서 지원 · 보호조치	· 권리고지 · 전문가 상담 · 심리정서 지원 · 보호조치	· 권리고지 · 전문가 상담 · 권익구제 · 보호조치	· 권리고지 · 수사단계 조력	· 권리고지 이후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가 ·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연계방안		· 대면서비스창구(오프라인 기관)와 비대면서비스창구(온라인)의 개설 · 권리고지를 위한 표준화된 안내서 작성 (지역별 연계기관 추가반영) · 학교/지역사회기관/경찰 및 사법체계에서 권리고지, 연계기관 안내				·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가 · 찾아가서 도움 줄 수 있는가

④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경찰 및 사법절차에서의 조력)

- 현황: 현재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는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경찰수사 과정 및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줄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없는 상황임. 예를 들어, 경찰 수사 시 동석할 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종사자 중 이러한 역량을 가진 종사자는 거의 없음
- 개선방안: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의 청소년 전문가들에게 형사소송법 등을 교육하여 경찰서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⑤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확대 (청소년법률지원기관)

- 현황: 현재 청소년대상 무료법률지원기관은 부천에 1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방안: 부천 이외의 지자체들에서 조례제정 등으로 청소년법률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

⑥ 조력 서비스 체계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 현황: 현재 CYS-Net 운영은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조력 체계가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 지역별 청소년지원기관의 수와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개선방안: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지역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를 접근해야 함

⑦ 통합사례관리 기능 및 위기개입 기능 강화

- 현황: 현재의 청소년서비스들은 위기청소년 대상의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며, 위기개입 기능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발생시 즉시적인 개입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참고문헌

- 경찰청 수사기획과 (20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김동민, 김동일 (2016).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김현규 (2018). 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7).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이봉주, 김동일, & 정익중 (2008). 위기청소년 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택호·한윤선(2016).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22권 4호, 567-593. 한국심리학회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4). Differential response to rep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OECD (1995). Our children at risk: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2016). Child maltreatment 2014. <http://www.acf.hhs.gov/programs/cb/resource/child-maltreatment-2014>
-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2016. <https://www.acf.hhs.gov/cb/resource/capta2016>